

회계부정과 회계감사

고영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회계감사 관행에 사정 당국의 칼끝이 맞춰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등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비리에 직접 연루된 금융감독 당국 못지않게 중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눈가림식으로 감사한 회계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불법 행위를 회계사가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당국도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제2의 부산저축은행’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낙인찍힌 감독기관으로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줄지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책임자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부실 감사에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금

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책임 떠넘기기’ 라고 비판했다.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행위인 회계감사를 부정을 적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짚어 내지 못한 부분들은 금융당국도 간과하고 넘어갔거나 일부러 묵인했던 내용이라며 회계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융감독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후적 기능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탓할 수는 없고 사전 감독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장주의에 의한 회계감사 계약상 우월적 지위(갑)에 있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낮은 감사 수입료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금품 등의 유혹을 떨치거나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상당수의 기업들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낮은 이해와 감사 수행시 비협조적인 감사현장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중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부정”은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또는 제 3 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부정은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부정행위에 특히 관심을 두게 된다. 부정의 목적이반드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감사인은 실제로 부정이 발생했는지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부정은 그 주체에 따라 경영자나 내부감시기구에 의한 “경영자 부정”과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 부정”으로 분류되며, 두 경우 모두 회사 외부의 제 3자와 공모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부정을 고려할 때는 그 성격상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유용”에 의한 왜곡표시의 두 가지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정한 재무보고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누락시켜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한 재무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 기록이나 문서에 대한 조작, 위조 또는 변조
-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또는 유의적 정보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
- 측정, 인식,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자산의 유용은 입금액의 횡령, 회사 자산의 절취, 공급받지 않은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 이와 같은 자산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이나 문서가 조작되기도 한다.

부정은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 및 그 실행 기회의 양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란, 예를 들어 경영자나 종업원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여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려고 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이익의 달성 요구 등 회사 내외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경영자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자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유의적이라면 부정한 재무보고 의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산의 유용이나 부정한 재무보고 의도에 대한 현실적 실행기회는, 예를 들어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가 내부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나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통제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경영자는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하여, 내부감시기구의 감시 아래 적절한 조직환경을 설정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유지하며 적절한 통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내부감시기구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회사의 회계 및 재무보고제도가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협의 감시와 재무통제, 법규 준수 등 적절한 통제절차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 환경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과 절차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즉 경영자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이나 적발을 위하여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이 일정한 수준까지 낮춰질 수는 있어도 모든 위험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경영자는 제거되지 아니한 잔존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다.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재무

보고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정과 오류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모두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은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감사의 고유 한계상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발되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감사는 판단과 시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회사의 내부 통제에는 고유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여러 증거의 본질적 성격이 결론적이기보다는 설득적이라는 사실 등 감사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모두 적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감사인은 다만 감사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오류에 의한 경우보다 부정에 의한 경우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다. 부정을 저지른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기록이나 문서를 위조하고, 거래 기록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 공모가 개입된다면 감사인에 의한 부정적발은 더욱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허위인 경우에도 설득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감사인이 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은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의 조작 정도, 부정 행위의 빈도와 범위, 부정의 금액적 크기, 회사의 내부 또는 외부와의 공모 정도 그리고 관련자들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는 종종 그 지위 자체가 성실하다고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립된 통제절차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종업원 부정으로 인한 경우 보다는 경영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더욱 크다. 특정 위치의 경영자는, 하급자에게 부정확하게 거래를 기록하게 하거나 거래의 기록을 은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통제절차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경영자는 직권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종업원에게 특정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부정 수행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다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 없다.

- (1) 합리적 확신을 얻지 못하였음
- (2)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절차의 수행 또는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음
- (3) 전문가로서의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가 결여됨
- (4)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실패

특히 부정이 경영자, 내부감시기구의 구성원, 종업원 등 내부 인원이나 회사 외부의 경영자나 내부 감시기구에 속한 사람이나 종업원 또는 제 3 자와의 공모에 의해 문서의 위조 등이 개입된 부정의 적발에는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의 의도적인 왜곡표시의 경우에는 더욱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 없다. 즉,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절차가 적절했는지, 또 그 결과를 기초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수행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파악과 평가에 필요하다.

-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 예를 들어 경영자의 특성, 통제 환경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 산업 여건 및 영업 특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사항 등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주변 상황
- 과거의 감사에서 파악된 부정적인 정보 등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을 초래하게 하는 증거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반증이 없는 한 회계 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때 문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감사인은 문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받지도 않는다.

감사인은 경영자에게 부정 위험과 더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경영자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게 된다. 경영자는 회사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운영과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있으므로 경영자가 이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이며,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자회사, 사업 부문, 거래 유형, 계정 과목 또는 재무제표 구성요소 및 이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조치 내용
- (2) 내부감사 업무의 내용 및 내부감사에서 파악된 부정, 내부통제상의 중요한 취약점
- (3) 회사의 윤리강령 또는 행위 규범 등 경영자가 종업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책임있는 행동규범이나 기업윤리에 대한 사항

내부감시기구는 회사전체의 위험감시, 재무통제 및 범규준수에 대한 감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내부감시기구는 경영자 책임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적절성, 부정과 오류의 발생 위험 및 경영자의 적격성과 성실성 등에 대한 내부감시기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예를 들어 경영자 부정의 발생 가능성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개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내부감시기구와 감사의 전반적인 수행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토의를 할 때 또는 기타 적절한 기회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토의를 통해 내부감시기구는 감사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감사인에게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감사위험”이란 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이다. 부정은 그 특성상 대부분 은폐되기 때문에 감사인에 의한 적발이 극히 곤란하다. 감사인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나 동기 또는 그 수단을 제공하고 있거나 이미 부정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주변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나 주변상황을 “부정위험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문서의 분실이나 총계정원장 잔액의 대차 불일치 또는 분석적 절차의 수행 결과 나타난 재무제표 수치의 모순 등이 이러한 사건이나 주변상황, 즉 부정위험요소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상황은 부정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부정위험요소가 반드시 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위험요소는 실제로 부정이 발생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며 감사인이 부정위험요소를 파악하게 되면 결국 고유위험 또는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결과에 따라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수정하여 적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입증절차는 파악된 부정위험요소에 대응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구체적 입증 감사절차는 해당 부정위험요소의 성격과 유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할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잠재적인 부정이나 오류의 유형, 그리고 그 발생 가능성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에 의한 것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소액 전도자금의 유용과 같은 부정은 왜곡표시 위험의 중요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에게 크게 유의적이지 않다. 전도자금의 금액과 운영 방법상 손실에 대한 금액상의 잠재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도자금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권한이 낮은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일한 문제가 상위의 경영자와 관련되어 있으면 금액 자체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아도 더 광범위한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영자 진술의 완전성과 진실성 여부, 회계기록과 문서의 조작 여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이미 입수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재검토한다.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재검토할 때는 종업원, 경영자 그리고 제 3자가 관련된 공모의 가능성도 고려한다. 특히 최고 경영자가 부정에 관련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를 마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정은 일반적으로 은폐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자가 알고 있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사실과, 부정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자 자신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해주는 문서화 된 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인은 부정이나 부정의혹 또는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에게 적시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경영자의 직위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은 부정이나 부정의혹 또는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성격, 크기 및 빈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부정의혹 또는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보다 상위이어야 한다.

감사인은 부정이 존재한다는 증거 또는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 때는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 내 하위직급의 종업원에 의한 소액의 자산 유용 등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아니한 부정도 동일하다.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는 공모의 가능성이나 경영자의 관련 여부 등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 또는 적발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을 파악한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특히 부정의 예방 또는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은 회사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감시기구에게도 이러한 취약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인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사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부정이나 오류의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사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한다.

감사인이 계속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감사계약의 해지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후조치를 회사가 하지 아니함(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는 부정도 해당)

- (2)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의 판단결과 또는 감사수행결과에 검토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부정 위험이 나타나고 있거나
- (3) 감사인이 경영자나 내부감시기구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앞에서 소개한 회계부정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와 현행 시장논리에 따른 자유계약 수임구조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잘못된 감사의견을 표명할 감사위험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감사대상 회사와 관련된 투자자, 채권자, 정부, 종업원, 잠재적 이해관계자 등 다수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회계감사 서비스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사유재가 아니라 현재적 또는 잠재적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장치인 것이다.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자 주장에 대해 올바른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독립성, 전문가적인 능력과 면밀한 주의를 가지고 공인회계사윤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회계 감사 서비스는 감사대상 회사가 아닌 다수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재인식하여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간에 용역의 내용과 대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감사보수를 직접적으로 수수하는 현행의 자유계약 수임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운영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회계 감사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공인회계사의 영문 명칭은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이다. Certified와 Public이 중첩되어 있는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